

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5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7. 11. 29.

발 의 자 : 김기완 의원 외 5인

제안이유

-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노령 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·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부담율을 차감 보조함에 따라 우리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25억원에 이르는 등 급격한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이 커지며,
- 2008년 신규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시는 국비(10%)차감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추가부담액이 1,842,014천원이 발생되며, 또한 국비가 차감된 비용에 대하여는 도비지원이 되지 않는 이중의 불이익이 초래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노인장수수당의 지급대상자에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함(안 제3조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해당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현행조례
- 관계법령
- 타 시·군 장수수당 운영 현황
-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시군별 예산내역

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급대상자)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수당지급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.</p> <p><u><단서설명></u></p>	<p>제3조(지급대상자)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<u>다만,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제외한다.</u></p>